

1 예산전용

□ 보고개요

○ 관련근거 :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55조의 2

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

○ 보고내용 : 2024년 4분기 민생노동국 예산전용 내역

- 예산전용내역 : 총 3건, 136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부 서	세부사업	통계목	예산현액	사용액		승인일
				증	감	
계				136,000	△136,000	
노동 정책과	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 및 활성화 지원	자차단체경상보조금 (308-01)	1,479,020	-	△30,000	'24 10. 22
		민간위탁사업비 (402-03)	30,000	30,000	-	
	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 및 활성화 지원	자차단체경상보조금 (308-01)	1,479,020		△20,000	'24 11 11
		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	시설비 (401-01)	50,000	20,000	
	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 및 활성화 지원	자차단체경상보조금 (308-01)	1,479,020		△86,000	'24 12. 12
		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	민간위탁사업비 (402-03)	86,000	86,000	

□ 전용 사유

○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 및 활성화 지원

- ‘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 활성화 지원’ 사업의 ‘자치단체경상보조금’ 30,000천원을 동일사업 내 ‘민간위탁사업비’로 전용
- ▶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시비 보조금 교부잔액 137백만원이 발생하여 도심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강북노동자복지관 입주('24.11.9.)에 따른 전기·통신 설비공사 등으로 활용

○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

- ‘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 활성화 지원’ 사업의 ‘자치단체경상보조금’ 20,000천원을 ‘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’ 사업 내 ‘시설비’로 전용
- ▶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시비 보조금 교부잔액 137백만원이 발생하여 ‘이동노동자 쉼터(녹번쉼터)’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('24.12.2.)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비로 활용

○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

- ‘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 활성화 지원’사업의 ‘자치단체경상보조금’ 86,000천원을 ‘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’ 사업 내 ‘민간위탁 사업비’로 전용
- ▶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시비 보조금 교부잔액 137백만원이 발생하여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인 ‘지하철 이동노동자 쉼터(사당·종각)’ 설치를 위한 공사비로 활용